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안 검토보고서

1. 제 안 자: 성주군수

2. 제안이유

○ 가야문화권 시군 간 역량 결집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동반자적 공동발전을 모색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행정협의회 구성 및 조직 (안 제3조, 제4조, 제7조)

1) 거창군・고성군・고령군・구례군・광양시・ 남원시・달성군・산청군・성주군・순천시・의령군・장수군・창녕군・ 하동군・함안군 ・함양군・합천군을 포함한 가야문화권 지역의 기초지방자치단체로 함.

2) 협의회 의장은 1명으로 하고 사무국은 의장 시・군에 둠.

3) 의장 선출은 호선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음.

나. 행정협의회 기능 (안 제2조)

1) 가야문화권의 공동발전에 관한 사항

2) 가야문화권의 공동개발에 관한 사항

3) 회원 지자체간 교류협력 증진 사업

4) 광역협의회 지원 사업

5) 기타 문화, 관광, 행정 등 공동발전 및 협력 사업 추진 등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

나. 협의회 규약안

5. 검토의견

○ 본 협의회 규약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에 근거하여 가야문화권 시·군 간 역량 결집과 상생발전을 위하여 관련된 현안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행정협의회의 구성과 조직, 처리사무 등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가야문화권 지역인 거창군, 고성군, 고령군, 달성군 등 17개 시·군의 기초지방자치단체로 협의회를 구성(안 제3조)하고, 가야문화권 공동발전 및 공동개발 사업, 교류협력 증진사업, 문화· 관광·행정 등 공동발전 및 협력사업 추진 등의 협의회의 기능(안 제2조)과 연 2회 정기회 개최(안 제5조), 협의회 경비 부담(안 제8조) 규정 등 총 1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검토결과 현재 가야문화권 5개 광역시·도에서 17개 시·군이 가입되어 활동 중인 사항으로 가야문화권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업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역량결집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긴밀한 협조와 공조를 통해 동반자적 공동 발전과 지역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규약안에 대해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